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5호 2015. 08. 0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3호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4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5-128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뒷면 계속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25호 등록 공인 공고 ----- 6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3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3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5. 국군 기무부대 서구담당관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
7.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9. 인천보훈지청장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분기1회”를 “분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실장
3.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미디어과장
4. 작전담당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정보담당간사 :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
6. 예비군담당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속하에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를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1항 중 “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를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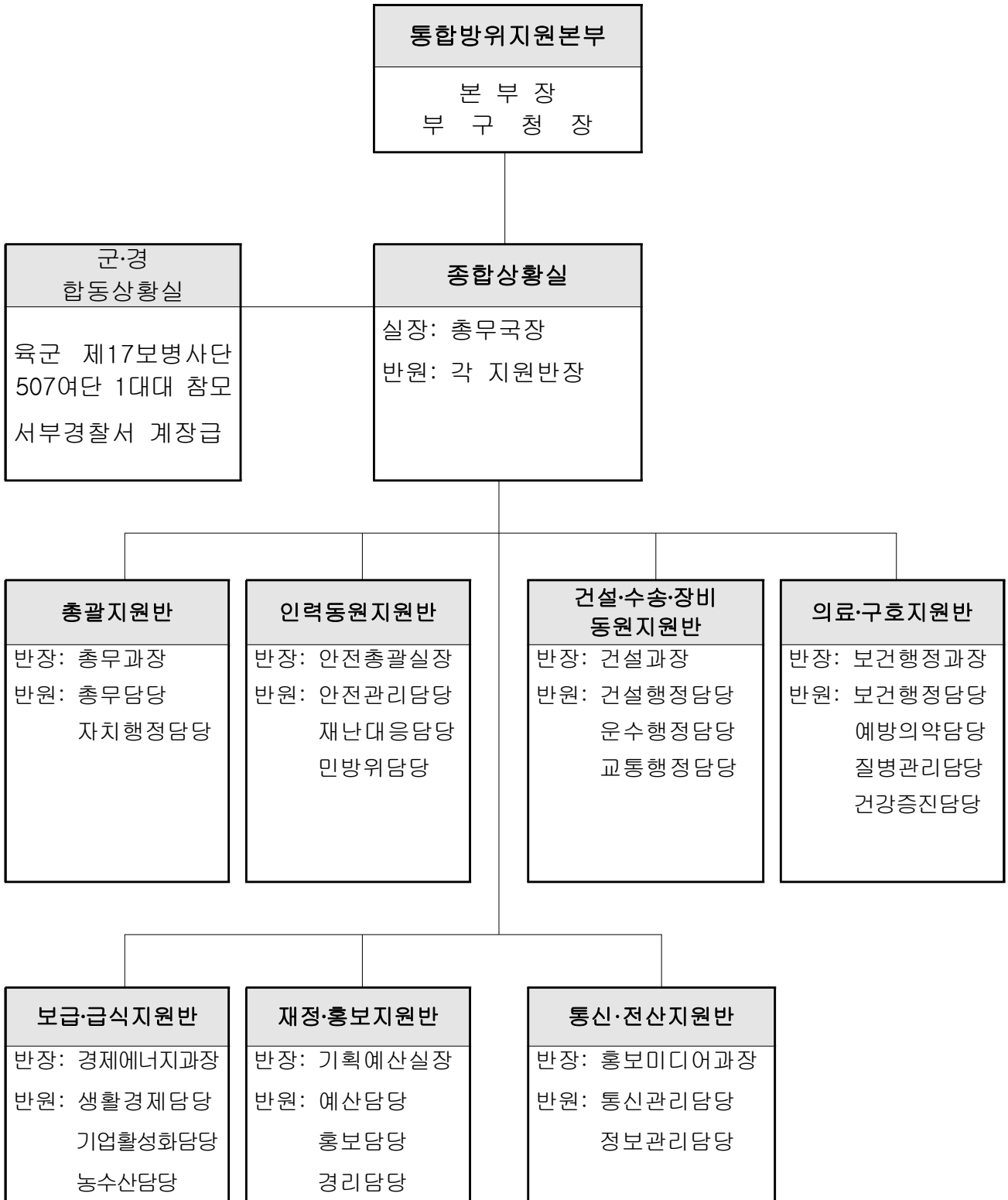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6조 관련)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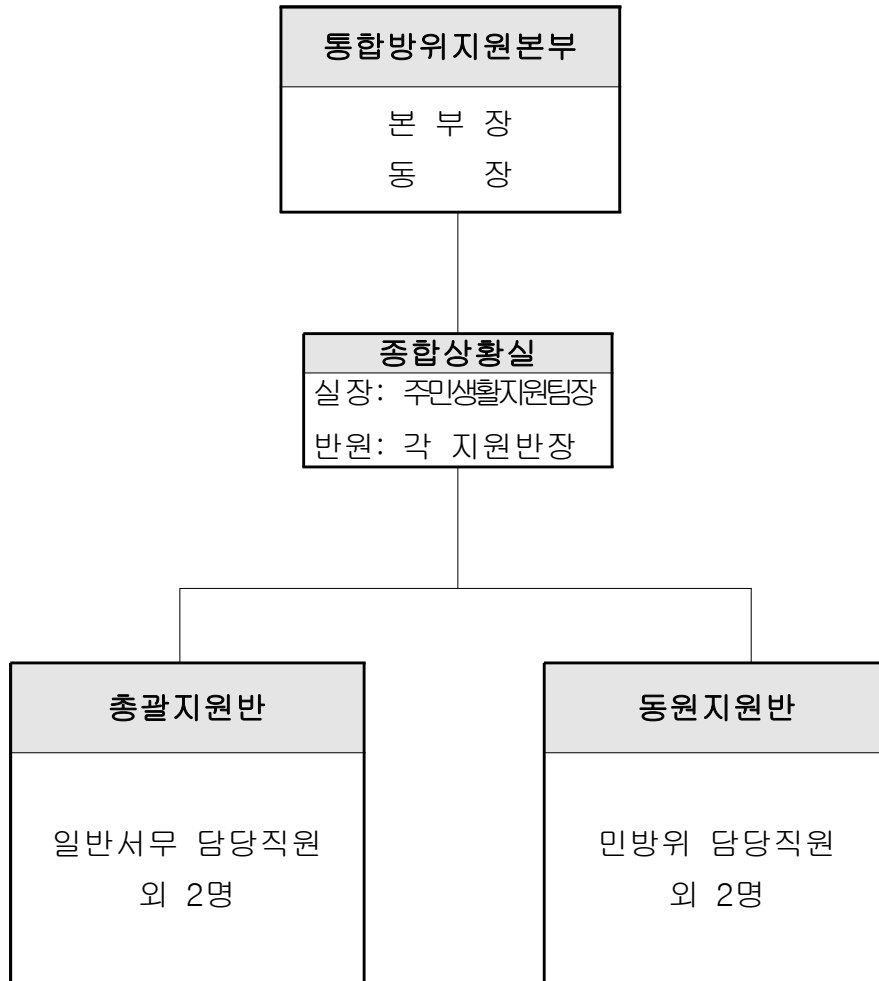
구 분	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 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총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합동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	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구 분	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을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손상등”을 “손상 등”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상호협력등을”을 “상호협력 등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면)	(단위 : cm)	(뒷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도위원증</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①</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right;">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②</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③</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④ ○○ 읍, 면, 동</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0.3</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1</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4</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8.1</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0.75</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0.75</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1</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0.3</p> </div> <p style="text-align: center;">4.9×7.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성명 생년월일 주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 명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⑥ (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0.3</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1.7</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3.2</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top: 5px;">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p>(비고) 1.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p> <p>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희망하는 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징수 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일로부터”를 “사용허가일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재해 기타”을 “재해,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취하원”을 “취하원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기타 운영상”을 “그 밖의 운영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를 “결과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구등의”를 “기구 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

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3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8: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20,000	30,000	40,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 사용료의 30%, 30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공연	30,000	
무대시설	공 바 톤		1회 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 젝 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 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 국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가산한 범위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계산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대소도구	○ 1회 사용료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취득가액에서 매년 감가상각(5%)비를 감한 자산가액의 5%를 기준 사용료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수영장(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0,000	35,000	
	단 체	43,000	33,000	30,000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0,000	25,000	
	단 체	36,000	24,000	20,000	
1일 이용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800	1,500	1,200	

【 비 고 】

1. 단체인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료를 할인 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사료관”을 각각“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서동 209-3번지”를“도요지로 54(경서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당일”을 “연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사용료 징수)”를“(수강료 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박물관의 수강료 및 가마 소성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체험장 사용료”를 “수강료 및 사용료”로 한다.

“별표1”를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학특강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방학특강 수강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방학특강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일체험학습 수강료(1회 기준)

학습과정	교육내용	이용요금 (1인 1점 기준)	
		개인	단체(20인 이상)
물레성형	물레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 제작	9,000원	7,000원
흙가래성형	흙가래와 흙가래를 서로 붙여가며 성형	8,000원	6,000원
토우만들기	흙을 눌러가며 동물이나 사람을 제작	8,000원	6,000원
판상성형	흙 판을 이용해 사각접시 등을 제작	10,000원	8,000원
핸드페인팅	초벌 된 접시나 컵에 안료로 그림 그리기	8,000원	6,000원
상회도자기	완성된 컵 위에 안료로 장식 후 150℃에서 소성	5,000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시 가격할인	4,000원	

※ ① 1일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

② 이용요금은 재료비, 소성비 포함 가격임(단, 소성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이용금액에서 3,000원을 감한 금액으로 산정)

③ 소성 후 직접방문 수령하지 않고 우송 또는 택배발송을 원할 경우 착불(수취인부담)

※ 소성이란 성형된 도자기를 가마에서 굽는 것을 뜻함

2.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수강료	수업시간
정규반A과정	월80,000원	주2회 / 1일 3시간
정규반B과정	월50,000원	주1회 / 1일 3시간
방학특강	30,000원	3일 / 1일 2시간

※ ① 정규반A과정, 정규반B과정의 소성비는 별도 본인부담

② 방학특강 수강료는 재료비, 소성비 포함 가격임

3. 가마 소성요금

구분	소성대행 (외부에서의뢰시)	정규반 소성요금(1kg)
가스가마 소성요금	10,000원	6,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거수등”이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등 관리대장

지정번호	0000-00		지 정 년 월일		수목명	
본 수			과 명		학 명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면 적	m ²
수 령		수고	m	흉 고 나무둘레	수관 직경	m
소 유 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현황사진은 별도첨부

(별지 제2호서식)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대장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상황

표4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949,500원으로 한다.

③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 제목“(여비지급)”을“(여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행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행비는 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의 제목“(여비의 종류)”를“(여비지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 내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 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호 중 “4급” 을 “5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예연구실장 : 7급에서 6급까지
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7급까지
4. 사 무 원 : 9급부터 8급까지
5. 안 내 원 : 공무직

제14조제3항 중 “직원의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를 “직원의 경력인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로 하고 단서 중 “다만,” 을 “다만, 관장의” 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목 “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를 “수강료 감면” 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수강신청 등)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마소성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공포에 맞추어 직원의 직급과 호봉을 다시 확정 한다.

[별표 1]

직원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관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도자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박물관 및 사료관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서구 문화발전에 5년 이상 기여한 사람
학예 연구 실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예 연구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도자기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 ○ 미술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사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안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사람 (만20세 이상)

[별표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구 분	사 무 명
관 장	○ 녹청자 박물관 업무 총괄
학예 연구 실장	○ 학예업무 총괄 ○ 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 학술자료의 조사 및 연구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학예 연구사	○ 도예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실 운영 계획 수립 ○ 가스 가마 및 전통 가마 관리 ○ 도예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날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 도자기 특강 운영 ○ 가마소성 ○ 이용고객 및 민원관리 ○ 소방계획 수립 및 방화관리, 안전관리 ○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운영
사 무 원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안, 청소, 환경관리 ○ 박물관 물품관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금 납부 및 실적관리
안 내 원	○ 녹청자 박물관 안내 ○ 녹청자 박물관 안내관 관리

[별표 3]

직원의 경력 인정(제14조 관련)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 교육,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분야 종사경력
을 경력(8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병 경력(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개인이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기업체(종사원 50인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가마 소성 신청서

접수자 :

결제방법 : 현금 · 카드

납부번호		과 정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소 성 비	금액	원정 (₩) 영수함		

※ 기재된 고객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며, 녹청자박물관 정보 활용 (프로그램 안내문 발송, SMS 문자수신)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인천광역시서구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소성비 납부 영수필증

접수자 :

납부번호		모 집 구 분	정규반A, 정규반B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소 성 비	금액	원정 (₩) 영수함

◎ 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에 의뢰한 소성비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련시설사용”을 “다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련시설 사용”으로, “의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하원”을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순위에 의한다”를 “우선순위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운영”을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최근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제8조제1항 중 “90일전”을 “9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이 용 자 준 수 사 항

1.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취하원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반]	[감면]	
	취하시설명			
	취하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취하사유			
	납부한 사용료			
	첨부	증빙자료 1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신청액			
	반환청구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자	법인(단체)명		
	주소	법인(단체)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법인(단체)설립근거		설립일자	
재산	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탁운영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탁관리목적	위탁운영면적		
세부운영계획	별지작성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갑문2로 49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7. 3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7-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7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2로 49 (오류동, 유창성업(주))	2012-10-25	갑문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7-1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28-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7-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15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7-8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8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4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7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9-9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4로 7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8-2, 1638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8로 28 (오류동, (주)바낙스)	2012-10-25	도담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28-4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386 (당하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37-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34-12 (당하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649-3, 648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05-37 (당하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9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34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98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5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2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13 (석남동, 차두리주차장)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1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66-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31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54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4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10 (석남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4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12 (석남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길 14-20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44-1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09 (심곡동)	2009-09-22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2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1-8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8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2-1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 (마전동, 디엔제이빌딩)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2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8-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7 (연희동, 주차타워)	2011-06-30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612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2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8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0-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 4-9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2-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29-10 (경서동)	2012-03-30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 이 있음을 부각	
2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7-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68 (당하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7-2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70 (당하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7.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15외 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7-3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29	봉수대로 315	2015.07.20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44-1	승학로 209	2015.07.20	건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2-7	원당대로 668	2015.07.15	건물 멸실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8-9 외 1필지	건지로 294	2015.07.15	건물 멸실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2-1	백범로630번길 16	2015.07.15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3. 결정조서 및 사유서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7	20	보조 간선	4,565 (21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1966. 11	
변경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4,565 (21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	

주1) ()는 금회 변경구간임.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27	중로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구간 폭원변경 - 연장 : 215m - 폭원 : 20m → 2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결정된 중로1-27호선 일부구간(215m)에 대한 도로폭원 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5-1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689-32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 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6	8,640.4	9	141.2		2-6	8,640.4	9	789.9	
			10	115.9						
			11	532.8						

※ 서구 연희동 689-32, -33, -34번지 획지 합병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9, 10, 11→ 9	획지합병	건축규모 확장(증축)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을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4,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생활체육단체의 지방보조금(사업비)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을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개정안	“ 별 지 참 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취	“ 별 지 참 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로,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를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규정”을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국민체육진흥법</u>」 제3조에 따라----- ----- -----<u>인천광역시 서구민</u>----- ----- ----- ----- ----- ----- ----- -----.</p>
<p>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u></p>	<p>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u>----- ----- -----.</p>
<p>제3조(보조금 지원) ① <u>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p>	<p>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u>범</u> <u>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u>-----. ② ----- -----. 1. ~ 6. (현행과 같음)</p>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검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규
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
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
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
른다.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검사) ① -----
-따라----- 단
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 적용)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 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25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검암경서동 등 11개동 주민센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5년 8월 10일 ~ 8월 19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암경서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암경서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검암경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검암경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연희동통합민원3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연희동통합민원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연희동장인/연희동통합민원3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연희동장인/연희동통합민원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청라1동장인/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청라1동장인/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청라2동장인/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청라2동장인/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0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신현원창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신현원창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신현원창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신현원창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4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7일	
석남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7일	
석남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8일	
가좌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8일	
가좌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8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9일	
가좌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9일	
가좌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2일	
검단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2일	
검단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2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3일	
검단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3일	
검단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5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0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146호(2014.09.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1-1 및 1-2호선, 사업명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83-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1-1 및 1-2호선)
 - 명칭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10m, L=800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금회	
-	소로	1	1	10	10	313	249	
-	소로	1	2	10	10	551	5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13	대2-59	광2-4	일반 도로	광2-4		
-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51	광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광2-4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금곡동 소로1-1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345-5	도	192	24	국	국토교통부	-	-	-	
2	712-1	도	8	2	국	국토교통부	-	-	-	
3	346-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	-	-	
4	712-2	도	1	1	국	국토교통부	-	-	-	
5	347-2	도	7	4	국	국토교통부	-	-	-	
6	산101-2	도	298	147	국	국토교통부	-	-	-	
7	712	도	246	156	국	국토교통부	-	-	-	
8	684-43	구	1,756	146	국	국토교통부	-	-	-	
9	342-2	도	350	234	이애훈 외 3인	금곡리 379	-	-	-	
					양봉석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479				
					양석환	김포군 검단면 장기리 138				
					양재동	인천 서구 금곡동 420				
10	338-2	도	377	273	우주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7동 1353 에스케이아파트 101동 1403호	-	-	-	
11	산100-2	도	198	178	양승근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125-5 신동아아파트2동 1102호	-	-	-	
12	산103-2	도	694	317	국	기획재정부	-	-	-	
13	340-16	대	293	2	전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106길22,403호 (역삼동)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근저당/지상권	
14	340-20	전	642	1	국	기획재정부	-	-	-	
15	345-6	대	42	9	공	인천광역시	-	-	-	
16	346-4	도	172	164	국	국토교통부	-	-	-	
17	346-1	도	49	35	국	국토교통부	-	-	-	
18	산102-1	도	198	117	국	국토교통부	-	-	-	
19	343-1	도	129	94	공	인천광역시 서구	-	-	-	
20	337-1	도	278	169	정윤근	경성부 운화정 79-2	-	-	-	
21	711	도	248	196	국	국토교통부	-	-	-	
22	710	도	188	161	국	국토교통부	-	-	-	
23	산106-1	도	496	286	국	국토교통부	-	-	-	
24	336-6	대	975	9	김충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9,1903동 1805호(주엽동,강선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파주엘지로지점)	근저당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684-30	구	1,309	64	국	국토교통부	-	-	-	
2	487-1	답	32	3	공	인천광역시	-	-	-	
3	487	답	583	1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	-	-	
4	486	전	605	6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	-	-	
5	485-1	대	1,207	50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	-	-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	-	-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 163-5 대성연립 라동 301호	-	-	-	
6	485-2	전	231	49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	-	-	
					양경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트115동 1104호	-	-	-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 163-5 대성연립 라동 301호	-	-	-	
7	478-9	도	20	19	양종석	마전리 827 목황아 파트 3동 406호	-	-	-	
8	480-2	대	631	4	김재원	금곡리 480	-	-	-	
					양태희	금곡리 471	-	-	-	
9	716	도	685	561	국	국토교통부	-	-	-	
10	482-6	도	24	24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심 곡동 342-11 환진계 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동450-3	근저당/ 지상권	
11	482-5	임	375	16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로497(마전동)	근저당	
12	482-4	임	1	1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로497(마전동)	근저당	
13	산59-2	임	14,421	1,723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동827복화아파트 1-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완정로92번 길41,208동 1401호 (마전동, 인천검단힐스 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 대로1601(금곡동)				
					양원석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 356-23				
					양희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102,1542동 1302호(상동,한아름)				
14	산87-2	임	7,141	606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 트115-1104	-	-	-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춘동923 동아아파트 115-1104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 성지아파트 102-1008				
					정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 수지구32블럭 삼성아 파트3-902				
15	714	도	317	316	국	국토교통부	-	-	-	
16	395	대	860	170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 곡동 395	검단농업협 동조합/경인 북부수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동 933-7/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7-1(강화지점)	근저당/ 근저당	
17	396	전	202	202	신경식	금곡동 390	-	-	-	
18	684-45	구	575	151	국	국토교통부	-	-	-	
19	388-4	전	389	53	안규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 화로223번길4(금곡 동)	-	-	-	
20	388-3	전	1,274	385	신은균	금곡동 388	-	-	-	
21	388-2	도	89	17	신은균	금곡동 388	-	-	-	
22	388-1	도	23	2	신은균	금곡동 388	-	-	-	
23	716-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	-	-	
24	456-32	답	329	1	공	인천광역시	-	-	-	
25	456-1	전	2,322	107	최영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58 세 광엔치리빌 109-206	-	-	-	
26	476	전	1,610	125	전득수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2동 1104호	조춘자	부천시 월미구 상동 26	근저당	
27	477-2	전	1,124	419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 곡동 478-4	검단농업협 동조합 외 다수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지상권/ 근저당 외 다수	
28	477-1	전	337	139	양옥균	강원도 인제군 상남 면 김부대왕로 2144	-	-	-	
					양인모	인천 서구 봉화로223 번길38-2(금곡동)				
					양옥춘	인천 연수구 면우로83 번길12,126동404호(동춘 동,건영아파트)				
					양형모	서울 영등포구 구계로 79,빌딩301호(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양은모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1144세번, 델몬트로드 1239				
					양옥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41,3002동301호(중동,성 산마을진영지혈)				
양홍모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18054그린레인,우드리지 드라이브5976									
29	478-3	전	271	108	양종석	마전리 827 목황아 파트 3동 406호	-	-	-	
30	478-2	대	182	3	양종석	마전리 827 목황아 파트 3동 406호	-	-	-	
31	478-10	전	102	62	양종석	마전리 827 목황아 파트 3동 406호	-	-	-	
32	478-11	전	194	150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계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 파트)	경기남부수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중부대로66(인계동) (서신지점)	근저당/ 지상권	
33	479-3	대	283	271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남부수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근저당/ 지상권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원인제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 파트)	산업협동조 합	중부대로66(인계동) (서신지점)	지상권	
34	산60-2	임	981	1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심 곡동 342-11 한진계 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동450-3	근저당/ 지상권	
35	산60-3	임	1,358	970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심 곡동 342-11 한진계 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동450-3	근저당/ 지상권	
36	470-9	임	208	173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로497(마전동)	근저당	
37	470-4	임	333	22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	-	-	
38	469-2	임	302	91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 1502호(논현동,별빛마 엘캐운티아파트)	-	-	-	
39	469	전	1,290	3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 1502호(논현동,별빛마 엘캐운티아파트)	-	-	-	
40	산74-4	임	250	5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 1502호(논현동,별빛마 엘캐운티아파트)	-	-	-	
41	산74-1	임	3,017	180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 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인천검 단힐스테이트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동827복화아파트 1-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완정로92번 길41,208동 1401호 (마전동, 인천검단힐스 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 대로1601(금곡동)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 356-23				
					양희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102,1542동 1302호(상동,한아름)				
42	산86	임	1,091	542	양경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춘동 연수지구32블 럭 삼성아파트3-902	-	-	-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성지아파트 102-1008				
					정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 수지구 32블럭 삼성아 파트 3-902				
43	산85	임	99	41	이윤중	금곡동 399	-	-	-	
44	399-1	대	1,157	315	이윤중	검단면 금곡리 399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근저당/ 지상권	
45	399-2	대	598	40	재단법인대한 예수장로교회 서울노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 회관신용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 지동 136-56	근저당	
46	397	대	330	215	임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54-20 성옥빌라 102호				
47	397-1	대	249	6	입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20 성옥빌라 102호				
48	404-5	전	225	45	신영식	금곡동 397	-	-	-	
49	404-17	대	22	5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 화로223번안길1, 3층 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 로 51(회현동1가)(검 단지점)	근저당	
50	404-15	전	124	60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 화로223번안길1, 3층 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 로 51(회현동1가)(검 단지점)	근저당	
51	404-8	대	605	23	신연식	금곡동 297	-	-	-	
52	404-3	도	567	1	정계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구 강석로 110,511-1501(마두 동,강촌마을)	-	-	-	
					정계영	서울 강북구 노해로13 길92(수유동)				
					정교숙	서울 강남구 언주로30 길57,이동4502호(도곡 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정교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1,52-1102(압구정 동 한양아파트)				
					정기영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 로30,1507-702(주엽 동 강선마을)				
					정윤영	서울 은평구 증산로15 길35-10,3-1008(신 사동 미성아파트)				
					정인영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7,103-1103(대방 동 현대아파트)				
					정정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78,문래우정아파트 101-406				
					정주영	인천 서구 가석로 412,16-201(가정동, 대진빌라)				
					정지영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 로606,비동1307호(장 항동,코오롱레이크폴리 스아이)				
					정진영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7,101-1505(홍제 동,부악재한화아파트)				
					정필영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 로259길22(사당동)				
					정혜영	성주 서대문구 홍제내 2길50(홍제동)				
정호원	성주 서대문구 창천동 53-36									
53	713-3	도	5	4	국	국토교통부	-	-	-	
54	684-48	구	55	1	국	국토교통부	-	-	-	
55	713-4	도	288	18	국	국토교통부	-	-	-	
56	383-12	도	508	176	국	국토교통부	-	-	-	

■ 지 장 물 조 서

금곡동 소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347-5	컨테이너	컨테이너	3×6	18	태영특 수포장 (주)	-		
2	인천	서구	금곡동	342-2	간판	철재	H=2m	1	태양특 수포장 주식회 사	-	(단위:개), 명칭: 태양특 수포장주식 회사	
					작업장	파이프, 천막	5.0×2.8	14				
3	인천	서구	금곡동	338-6	대문	H빔, 함석	H=1.8m	1	우주훈	-	(단위:개)	
					담장	파이프, 함석	H=2m, L=75m	1				(단위:개소)
					컨테이너	컨테이너	4×8	32				
					컨테이너	컨테이너	5.0×2.5	12.5				
4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6-1	담장	파이프, 함석	H=1.2m, L=31m	1	동연금 속(주)	-	(단위:개소)	
					간판	철재, 파 이프	H=4m	1				(단위:개) 명칭(컴퓨 터)
					간판	철재, 파 이프	H=3m	1				(단위:개), 명칭(연천모 터스)
					적재물	프레스기	-	11				(단위:개)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3-2	버스정차 대	철재	1.6×4.8	8	공	인천광역시	(단위:개)	
					의자	철재	-	2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485-1	화장실	블록,슬라브	1.7×3.7	6	신현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	
2	인천	서구	금곡동	485-2	창고	블록,스레트	3.7×8.0	30	이강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1			(단위:주)
					수목	조경수	소나무	1			(단위:주)
3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개인	-	(단위:주)
4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조경수	소나무	4	양형모 외 6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비동 301호(여의도동,한양아파트)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4			(단위:주)
					수목	조경수	개나리	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사철나무	14			(단위:주)
					조경석	석재	-	50			(단위:개)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86	참호	모래주머니	2.0×1.5	3	군부대	-	
6	인천	서구	금곡동	산87-2	담장	철재철크스	H=1.5m, L=35m	1	개인	-	(단위:개소)
7	인천	서구	금곡동	395	담장	벽돌조	H=1.5m, L=41m	1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5	(단위:개소)
					대문	벽돌, 철재	H=2.5m	1			(단위:개소)
					창고	판넬조	1.2×3.3	4			
					수목	조경수	회향목	10			(단위:주)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단위:주)
					수목	유실수	포도나무	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향나무	5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장미나무	2			(단위:주)
					조경석	자연석	-	31			(단위:개)
8	인천	서구	금곡동	396	창고	파이프,철크	4.3×9.1	39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수목	유실수	감나무	1			(단위:주)
9	인천	서구	금곡동	396	화장실	블록,슬라브	1.7×2.3	4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비닐하우스	파이프	8.0×4.5	36			
10	인천	서구	금곡동	684-4 5	관정	콘크리트, 파이프	소공	1	개인	-	(단위:개소)
11	인천	서구	금곡동	477-2, 476	수목	조경수	회향목	20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8-4	(단위:주)
12	인천	서구	금곡동	478-2	가추	목조,스레트	2.0×4.5	9	양종석	마전리 827 목항아파트 3동 406호	
13	인천	서구	금곡동	산60-3	참호	모래주머니	2.0×1.5	3	군부대	-	
14	인천	서구	금곡동	399-1	농막	파이프, 비닐	7.5×7.4	56	이윤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리 399-1	
					건사	블록,스레트	3.0×3.5	10.5			
					건사	블록,스레트	4.2×3.6	15.12			
15	인천	서구	금곡동	399-2	간판	철재	H=2m	1	(재)대한예수장로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단위:개), 명칭:불성교회
					화단	콘크리트, 벽돌	1.2×3.0	4			
					담장	목조	H=1.2m	1			(단위:개소)
					수목	조경수	회향목	1			(단위: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03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8호선, 사업명 : 석남동 소1-18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구간)】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1-18호선)
 - 명칭 : 석남동 소1-18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구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10m, L=196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소로	1	18	10	10	420	224	196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420	석남 223-358 (광2-9)	석남 223-346 (소3-3)	일반 도로	-	인천직할시고시 제1406호 (1988.12.02)	
시행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196	석남 223-526	석남 223-644	일반 도로	-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223-526	유	10	10	금강산업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동 223-359				
2	223-522	유	1,080	1,080	금강산업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동 223-359				
3	223-644	유	838	838	오광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산동 931-33 지산그 라띠아 103-508				
					김영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 호수마을아파트 114동 1701호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 군	읍/ 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석남동	223- 734	관리실	컨테이너	4.0×2.0	8	금강산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359	
					차단기	철재	-	1(식)			
					세륜시설	콘크리트, 철재	24×5.0	1(식)			
					수도계량 기	철재	-	1(개)			
					담장	콘크리트	H=2M	1(개소)			
2	인천	서구	석남동	223- 644	계근대	철재	-	1(개소)	서울아스 콘(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74	
					담장	철재펜스	H=2.5m, L=20m	1(개소)			
					간이화장 실	조립식, 철 재	2.0×1.2	2			
3	인천	서구	석남동	223- 581	간판	철재	H=2.2m	1(개)	(주)홍성 스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81	
4	인천	서구	석남동	223- 572	화장실	벽돌, 슬라브	2.0×3.0	6	경인종합 열처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72	
					담장	벽돌조	H=1.5m, L=15m	1(개소)			
5	인천	서구	석남동	223- 619	화장실	벽돌, 슬라브	4.0×2.5	10	(주)아들 리에에프 엔씨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19	
					담장	벽돌조	H=1.5m, L=55m	1(개소)			